고양 향동 RicheVille 리슈빌 · 계룡건설

고양 향동 리슈빌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

1522-1661

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고양시장 주택지 - 189336호 (2016.6.29)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
※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, 이속지로 인한 청약접수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본 공동주택은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」(2016.05.19)이 적용되었으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기 작모 없으시기 바랍니다.
· 청약 순위제 기간 소멸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
· 기존 1,2,3순위 → 현행 1,2순위 / 순도경 1순위 발생요건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
· 인정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: 기존 "무주택세대주" → 현행 "무주택세대구성원 (1세대에 1명만 청약신청가능) 단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
·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및 재한 완화 : 예치금액 변경기일 도래 전까지 → 주택 분양 및 청약기능/가입업체 예치금액 이하로 예치하는 변경 가능
· 인정주택 가점제 청약시 유주택자 요건 완화 : 기존 "무주택세대주" → 현행 "무주택세대구성원 (1세대에 1명만 청약신청가능) 단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
· 소형 저가주택 가점 변화 : 기존 60분이하 →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60분이하+공시가격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,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

※ 상기 내용 외 세부한 사항은 2016.05.19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청약자 유의사항
· 본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. 6. 29 입니다. (청약자격 조건의 기간, 나이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)
· 해당 주택건설지역(고양시) 은 "주택법" 제41조 제1항의 규제 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"주택법"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한 과밀지역에 해당됨.
·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" 제2조 제1호 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되는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 거주자가 청약신청이 가능하나, 해당 주택건설지역(고양시)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. 입주자모집공고일 (2016.06.29) 현재 고양시에 1년이상 거주한 자(2015.06.29 이전부터 계속거주)에게 공급 세대수의 30%를 우선 공급하며, 경기도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(2015.12.29이전부터 계속거주)에게 20%를 공급(고양시 공급물량 이외 지역 및 기타 지역 공급물량에 포함)하며, 나머지 50%는 수도권거주자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6개월 이전 거주자)에게 공급합니다.
(1) 주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"주택법"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"주택법시행령_제45조의2" 제7항을 표2의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. 단, 동조 제2항 에 의거 "주택법시행령_제45조의2" 제7항을 표2의 규정에 의거 "주택법시행령_제45조의2" 제7항을 표2의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. 단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%에 해당하는 분양금 이상을 입주일 전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%에 해당하는 분양금 상당금액을